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62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윤건영 · 양부남 · 김 윤
차지호 · 진성준 · 박정현
이광희 · 이해식 · 김성희
정춘생 · 송기현 · 민병덕
고민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
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
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등이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
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으로 인해 생명 ·
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제31조제2항제5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는 관리주체 또는 안전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보험가입)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1조(보험가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는 관리주체 또는 안전검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u><신설></u>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